제29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

## 



2022. 10. 21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2년 10월 21일 전문위원 장석현

## 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: 2022 - 98

나. 발 의 자: 고찬양 의원 외 6명

다. 발의일자: 2022년 10월 4일

라. 회부일자: 2022년 10월 11일

## 2. 제정이유

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공무직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본 조례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
- 나.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을 구청장의 책무로 함(안 제4조)
- 다. 적정한 정원관리, 공개채용 원칙 등 공무직의 인사관리를 규정함(안 제6조~제12조)
- 라. 공무직의 복무의무를 정의하고 준수하도록 함(안 제15조)
- 마. 정년, 해고 등의 제한,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 공무직의 신분과 권익보장에 대해 규정함(안 제18조~제25조)

## 4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제13조 제2항 제1호, 제28조, 제118조
- 2)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제33조
- 3) 「근로기준법」제96조
- 4)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」
- 나. 소관부서: 문화체육과
- 다. 조례안 예고(2022. 10. 6. ~ 2022. 10. 12.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# 가. 제정취지 및 필요성 검토

-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·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<sup>1)</sup>의 고용 안정과 권익보호, 체계적인 관리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자 고찬양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것임
- 현재, 공무직에 관해 직접 규율하는 상위 법령은 없으며 「근로 기준법」 등 노동 관련 법령을 적용 받고 있음. 또한 구체적인 근로조건 및 보수는 임금 및 단체 협약에 의하며 강서구의 공무직 인사관리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」(훈령)에 따르고 있음
- 본 조례안은 공무직의 채용원칙 및 복무의무,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총 7장 2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

<sup>1)</sup>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현황('22년 9월말 기준): 211명(청원경찰 4명 미포함)

# [제정안의 구성]

조 문	규 정 사 항
제1장 총칙	
제1조	목적
제2조	정의
제3조	적용범위
제4조	구청장 등의 책무
제5조	단체협약과의 관계
제2장 인사관리	
제6조	공무직에 대한 임면권 등
제7조	정원
제8조	직종의 분류 등
제9조	채용
제10조	채용 결격사유
제11조	전자적 시스템의 구축・운영
제12조	신분증
제3장 보수	
제13조	보수결정의 원칙
제14조	실비보상
제4장 복무	
제15조	복무의무
제16조	출장
제17조	다른 조례의 준용 등
제5장 신분 및 권익의 보장	
제18조	정년
제19조	해고 등의 제한
제20조	휴직 등
제21조	차별적 처우의 금지
제22조	후생복지
제23조	노동조합
제24조	노사협의회
제25조	고충처리
제6장 표창 및 징계	
제26조	표창
제27조	징계
제7장 보칙	
제28조	손해배상

- 참고로, 국회에서는 진선미 의원 등 10인은 2021년 1월 「지방 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법률안(의안번호-201726)」을 발의 하였으나 자치단체별로 근무여건, 보수 등 여건이 다르고 훈령 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 등으로 계류 중에 있음
- 따라서, 본 조례안과 관련한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 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.
- 「지방자치법」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공무직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「지방자치법」제118조에 따라 지휘·감독하는 소속 직원으로서 「지방자치법」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의견(법제처 2013. 3. 27. 의견제시 13-0083)이 있었으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

#### 나. 세부 내용 검토

- **안 제1조는** 강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
- 안 제2조는 공무직이란 상시적·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강서구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음

- 참고로 고용노동부가 공통적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(2017년 12월)한 「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」에 따르면 "공무직"은 기존 공공부문의 '무기계약직'이라는 명칭을 대신하는 것으로 "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"로 정의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도 표준안에 따르고 있음

#### ※ [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]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공무직 등 근로자"란 <u>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</u>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.
- **안 제3조**는 공무직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**안 제4조**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
- 안 제5조는 본 조례안과 단체협약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본 조례안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공무직은 「근로기준법」등 노동관련 법령을 적용 받으며,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서 규정한 단체 협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과 단체협약간의 적용순위를 정하려는 것임

#### ※ [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]

제33조(기준의 효력)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.

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.

- **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**는 구청장의 공무직에 대한 임면권, 공무직의 적정한 정원관리, 공무직의 직종의 분류 등을 규정함
- 안 제9조는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적· 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공무직 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의 안정적 고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
  - 참고로 상시적·지속적 업무의 결원 시 공무직 채용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(인사권)을 침해한다는 견해에 대해 의무규정이 아닌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적·선언적 성격의 규정은 가능하다는 법제처 의견(법제처 2013. 9. 6. 의견제시 13-0257)에 따라 본 조항의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
- **안 제10조**는 공무직 채용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
-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공무직의 인사·급여·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 구축·운영과 공무직의 신분증 발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
  - 특히, 신분증 발급에 대한 규정은 공무직 근로자의 소속감 및 책임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,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의 신분증을 발급하고 색상·크기·디자인 등 눈에 띄는 차이를 지양해야 할 것임

-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공무직의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의 표준 생계비,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보수결정의 원칙과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**안 제15조**는 공무직의 복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
- **안 제16조**는 소속 부서의 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공무직의 출장을 명할 수 있고 관련 출장비용을 강서구 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 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17조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준용하고 휴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안 제18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공무직의 신분 및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직의 해고 등의 제한, 휴직, 차별적 처우의 금지, 고충처리 등에 대하여 규정함
- 안 제26조는 성실하고 공적이 큰 공무직에 대하여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등을 위해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7조는 단체협약에 의거한 공무직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**안 제28조**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외에는 공무직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

### 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·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신분, 고용,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
- 그동안 공무직 근로자는 「근로기준법」등 노동 법률에 따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·복무 등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협약을 적용 받는 등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위주의 규정만 존재함으로써 신분과 고용,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상태에 있었음
- 이에,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측면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, 앞으로도 계속 공무직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

## 참고

## 관련 법령

### \_\_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  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
  -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  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  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
  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  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  - 사.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  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  - 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  - 차. 주민등록 관리
  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-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- 제118조(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(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)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훈련·복무·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### 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- 제33조(기준의 효력) ① <u>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</u>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.
  -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.

## \_\_ 근로기준법

제96조(단체협약의 준수) ① <u>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</u>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.